

[산업피해구제제도]

반덤핑 제소 성공 사례

- 전기면도기 반덤핑 제소를 중심으로

자료제공 •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

제소배경

WTO 출범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개방이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당시 수입 자유화율은 99% 선을 선회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품목의 수입이 자유화되어 줍디 줍은 국내시장에서 국내외기업들이 서로 각축하며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한 와중에서 외국 수입제품의 많은 부분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덤프수입되고 있고 또 외국상품의 수입이 급증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한 무절제한 덤프수입이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 그러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업계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발동하는 소위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당시도 현재와 같이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는 WTO 체제하에서 국제규범상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캐나다·일본 및 EU와 같은 선진국가에서는 활발히 운영하고 최대한으로 자국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피해구제시스템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당시 통상산업부 소속으로 의욕적으로 설립된 무역위원회에서 산업피해구제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무역

위원회는 설립이후 1996년말까지 32건에 대해 구제조치를 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한 구제조치와 관련하여 당시의 내역을 보면 총 32건 중 관세율 인상이 17건으로 그중 가장 많았다. 행정지도가 6건, 수입수량제한이 3건, 기타 6건이었다. 1987년에 단 한건의 구제신청이 있었던 것에 비해 1996년 한해에 12건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 우리도 이 분야에서 그런대로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생각된다.

처음에는 구제조치 자체가 생소해서 무역을 오랫동안 영위하고 있었던 업체조차도 외면하였던 것이 그동안 무역인들의 국제감각이 월등히 신장되고 정부에서도 꾸준히 홍보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들어 구제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는 그만큼 우리가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 이용도가 괄목할 만하게 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지만 한편 수입물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니 서글프기도 한 것이다.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세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첫째가 덤프방지관세인데 외국상품이 정상가격이하로 다시 말해서 덤프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

다. 즉 덤픽수출자에 대해 정상가격과 덤픽가격의 차액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관세를 물도록 함으로써 국내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체로 절차면에서 간편하고 관세를 인상이라는 즉각 발생하는 구제조치라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사료된다. 둘째로 상계관세인데 수출의 보조금지급 등에 대한 수입국의 대항적 할증관세제도인 것이다. 즉 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상품이 수입됨으로써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보조금이라는 전제가 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고, 특히 보조금 지급사실을 적기에 포착하는 것이 수입국으로서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셋째가 세이프가드(safeguards)인데, 우리말로는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 흔히 번역되어 통용되고 있다. 외국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수량제한, 관세율인상 혹은 관계법령에 의한 지원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다만 이 제도는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부담이 남아있고, 보상에 대한 합의가 안될 경우 상대국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받을 위험도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활동을 신중하게 자제하는 것이 관련국가들이 취하는 최근의 경향이다.

여러가지 상품 중에서도 이러한 덤픽수입으로 인하여 피해가 가장 많은 것이 특히 전기용품인데 그중에서도 소형가전이 더욱 그러하였다. 피해자가 제조하고 있는 남성용 전기면도기는 소형가전제품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심하다고 생각되었다. 몇몇 남자 않은 국내 전기면도기 제조업체들과 모여서 여러차례 논의한 결과 1996년 6월 9일자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던 세계적으로 유수하다고 하는 전기면도기업체를 상대로 남성용

전기면도기 반덤핑제소를 결의하게 되었다. 지금은 사정이 그려하지만 그 당시 전기면도기 수입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70%선을 상회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수량중심이고 금액중심의 수입품 침투도는 80%에 육박하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기억된다.

연전에 어떤 국내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외제 전기면도기의 국내 침투도가 99.9%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수치이다. 어디서 무슨 자료에 의한 것인지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99.9%라면 100%라는 표현을 완곡하게 말한 것인데, 결국 국내에는 외국 전기면도기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국내에서 전기면도기에 대한 생산, 수입, 판매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유수하다고 하는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수치가 이럴진데 하물며 이를 믿고 텔끝만큼의 검증도 없이 그대로 무작정 발표한 몇몇 일간 신문도 한심한 일이라고 보여진다. 오늘날의 한심한 국내 작태의 일부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뿐이다.

국산전기면도기의 수난

1938년 독일의 필립스사에서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전기면도기를 만들어낸 이후 반세기 가량 흘러오는 동안 그 종류도 다양해졌다. 가정용 전기면도기, 자동차용 전기면도기, 방수용 전기면도기, 여행자용 전기면도기, 여성용 전기면도기 등이 그것이다.

전통적으로 면도기하면 남성용이었던 것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여성용 전기면도기가 선보이게 되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면도할 부위가 더 넓어서구에서는 여성들이 여성용 면도기를 크게 선호함에 따라 앞으로는 전기면도기를 전기면도기 제조의 쌍벽인 필립스와 브라운에서 대거 이쪽으로 생산 및 판매를 선회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면도기 제조에 있어 크나큰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 같은 현상이다.

[산업피해구제제도]

전기면도기 현황

전세계의 전기면도기 시장은 필립스와 브라운 양대 메이커가 반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필립스는 전통적으로 회전식(回轉式, Rotation)에 강하고, 반대로 브라운은 진동식(振動式, vibration)에 강해서, 세계시장의 반 이상을 각각 그 분야에서 이 양자가 석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몇몇 일본 제조업체도 이제는 상당히 세계의 고객 속에 침투하여 나름대로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시장에서는 필립스가, 일본에서는 브라운이 전통적으로 강하고, 일본제품의 대부분이 브라운과 유사한 타입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에서의 전기면도기 제조역사는 (주)우림전자의 역사와 같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주)우림전자는 1979년 전기면도기제조와 더불어 공장을 시작하였다. 공장생산 아래 20여년이 되는 셈이다. 길지도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우리나라 전기면도기 제조역사에서 7, 8년전만 해도 열두어

제조업체가 있었는데, 하나, 둘 전업하거나 도산해서 이제 한 손으로 셀 정도가 되었고, 그나마도 한 두업체는 누적된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조만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왜 이러한 꼴이 되었는지는 자명한 일이다. 제소 당시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1996년도 전체의 전기면도기 시장 점유율은 다음 도표와 같았다. 그러나 현재는 외제면도기의 시장점유율이 70%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점거율(市場占據率)이란 경쟁시장에서 특정상품의 총판매량중에서 특정기업상품의 총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율(比率)을 말한다.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 또는 마켓셰어(market share)라고도 하여 시장지배력의 지표가 되고 현대마케팅 연구의 주요자료가 된다. 생산량에서 본 생산 집중도와 거의 비례하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경우는 생산집중도가 높아도 시장 점거율이 낮을 경우가 있는 것도 있다. 이에 비하여 시장침투도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전기면도기의 국내 시장점유율 현황(1996년)

구 분 업 체	시장점유율		시장침투도	
	개 수	%	금 액	%
Braun	381,600	12	26,419,500,000	19
Philips	1,113,000	35	69,525,000,000	50
일제	413,400	13	19,467,000,000	14
기타	31,800	1	1,390,500,000	1
계	1,939,800	61	116,802	84
국산	1,240,200	39	22,248,000,000	16
총계	3,180,000	100	US\$ 154,500,000 (₩ 139,050,000,000) (환율은 96년말 기준)	100

것이며, 최근에는 시장침투도가 해외시장 잠식도를 기준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전기면도기 시장점거도

시장점거도('96)

	수량기준 (시장점유율)	금액기준 (시장침투도)	비 고
국 산	40% (1,000,000개)	20%	성진전자 (주)선보정밀 (주)우립전자
수입	60% (1,500,000개)	80%	필립스 브라운 마쓰시다 산요
계	2,500,000개	100%	

전기면도기('96)

업체	개 수	가격
브라운	12%	19%
필립스	35%	50%
일 제	13%	14%
국 산	40%	17%
계	1,060,000개	US\$ 51,500,000 (₩46,350,000,000)

※ 1997. 7. 4 현재

브라운 코리아의 집계에 의한 수치

조사개요

국산전기면도기 반덤핑제소의 조사경위는 다음과 같다.

- '96. 6. 14 : (주)우립전자로부터 덤프방지 관세부과 신청
- '96. 7. 9 : 조사개시결정(관보공고 '96. 7. 20)
- '96. 7. 25 :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및 수요자에 대한 질문서 송부
- '96. 9. 10 : 네덜란드 필립스 등의 요청에 따라 예비조치기간연장(1개월)

- '96. 11. 14 : 덤프율 및 산업피해 예비판정 (긍정)
- '96. 11. 19 : 본조사 개시
- '96. 12. 20 : 재정경제원 잠정조치 (29. 19~65.94%)
- '97. 1. 28 :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 개최
- '97. 3. 14 : 최종덤핑 판정(23.14~45.68%)
일본마스시다(30.09~40.06%)
산요(25.57%)
히다찌(45.68%)
독일 브라운(23.14%)
네덜란드 필립스(37.96~48.27%)
중국 필립스(34.59%)
중국 마스시다(26.85%)
- '97. 1. 28 : 전기면도기 공청회(무역위원회)
- '97. 4. 10 : 수출자측 가격인상 제의
- '97. 4. 10 : 전기면도기 덤프 방지관세 부과 검토 기간연장
- '97. 4. 30 : 가격인상 약속에 의한 조사 종결

결론 및 반성

잠정조치와 공청회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중국에는 구제조치가 취해진 것은 천만다행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려운 상황속에서 취해진 대책이었지만 지금 회고해 보면 힘도 들었고 그런대로 효과도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어쩔 수 없는 상황하에서의 필요악으로 취해진 것이었으며 최종 목표로 가는 중간프로세스에 지나지 않는 잠정적인 방편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제 수입선다변화제도도 작년 6월 30일자로 소멸되어 국내 시장이 완전개방되었다. 그야말로 국경없는(boundless) 한 지붕 밑의 지구촌이 되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우리 전기면도기 제조업체가 기술개발, 디자인개발, 생산성제고로 더 한층 박차를 가해 그들과 연계, 어디서나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 가격,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